

청렴·인권정책협의회 설치
및 운영에 관한 지침

청렴·인권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

제정 2021. 11. 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388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이라 한다)의 반부패·청렴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,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청렴·인권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청렴·인권정책협의회의 구성

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개발원은 반부패·청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, 자문 등을 위하여 청렴·인권정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, 자문 등을 한다.

1. 부패방지시책 수립 계획 및 추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
2. 인권경영 이행지침 운영과 관련된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원장과 비상임 감사로 한다.

③ 내부위원은 근로자대표와 3급 이상 실·부서장 중 3인 이내, 외부위원은 대학교수, 변호사, 노무사,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.

-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⑥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청렴·인권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-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 선임자(선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)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- ⑧ 협의회는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,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역할을 수행한다.
- ⑨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청렴·인권정책협의회의 운영

제5조(소집 및 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- ② 위원장은 매년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-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배제·회피·기피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배제된다.

1.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 안건을 심의·의결하는데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배제한다.
 2. 협의회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 공정심 및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
- ② 위원의 배제·회피·기피 사유로 인하여 의사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기준으로 한 의사정족수 충족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유지) 협의회는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비밀·정보·문서 등을 제3자에게 임의로 비밀누설·공표·배포·유포 및 도용할 수 없다.

제8조(수당 등) 협의회 회의 등에 참여할 때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

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개발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
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
3.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4.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
5.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
6.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